

논현2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고

「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0조 규정에 의거 「논현2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」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5일

남동구 논현2동장



■ 개정사항(주요내용)

- 제7조(위원의 신청·선정·위촉)
 - 위원추천 관련 조문삭제 (공개모집으로 일원화) 및 조례근거 정정
 - 위원자격 증빙 강화 (사업자등록증, 건강보험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첨부)
- 제8조(추천위원회) 삭제

■ 개정유형 : 일부개정

■ 시 행 일 : 2026. 1. 1.

■ 신 · 구조문 대비표

관련조항	현 행	개정안
제7조 (위원의 신청·선정· 위촉)	① <u>위원 후보자 추천과 위원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르며, 위원 신청 또는 추천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u>	① <u>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,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u>
	1. 위원 신청서 및 서약서 (별지 제2호 서식) 2. 위원 추천서 및 서약서 (별지 제3호 서식)	1. <삭 제> 2. <삭 제>
	② <u>위원의 선정·위촉은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.</u>	② ----- <u>조례 제7조의2</u> -----
	③ <u>모집인원보다 접수자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는다.</u>	<삭 제>
	<신 설>	④ <u>조례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(사본)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재직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.</u>
제8조(추첨 운영위원회)	① <u>위원 모집에 따른 공개추첨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 제8조 제8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내에 추첨 운영위원회를 둔다.</u>	<삭 제>
	② <u>추첨 운영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등에 의뢰하여 추첨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공개추첨이 종료되면 추첨 운영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u>	<삭 제>
	③ <u>추첨방식 및 절차는 추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u>	<삭 제>

■ 본 문 : “별 첨”